



www.itce.kr

2013 IT Convergence Expo Korea 2013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2013. 8. 27(화) ▶ 29(목) · 3일간 exco

주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관 kotra 전자신문
 (주)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BIP (주)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GEM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주)엑스코 전략전시팀 Tel. 053-601-5384 Fax. 053-601-5089 E-mail. itce@exco.co.kr

참가신청서

회 사 명	(국문)	(영문)
대표자명	(국문)	(영문)
주 소	□□□-□□□	
E-mail		Homepage
Tel	휴 대 폰	Fax
담당자명	부 서	직 위
전시품목		

구 분		단 가 (VAT별도)	신청내역	신청금액
부 스	독립부스	₩1,000,000 / 부스	부스	원
	조립부스	₩1,500,000 / 부스	부스	원
	프리미엄부스 A	₩3,500,000 / 부스	2부스	원
	프리미엄부스 B	₩6,500,000 / 부스	4부스	원
전 기	단상220V (60Hz)	₩30,000 / KW	☐ () KW 24시간	원
	삼상220V (60Hz)		☐ () KW 24시간	
	삼상380V (60Hz)		☐ () KW 24시간	
전 화	시내·외	₩80,000 / 대	대	원
	국 제	₩150,000 / 대	대	
급·배수		₩150,000 / 개소	개소	원
압축공기		₩150,000 / 개소	개소	원
바코드 시스템		₩200,000 / 대	대	원
LAN		₩70,000 / PORT	PORT	원
디렉토리유료광고 (국영문판/칼라)	표2 및 대면	₩1,500,000 / 면	면	원
	표3 및 대면	₩1,000,000 / 면	면	
	내지면	₩800,000 / 면	면	
소 계				원
부가가치세 (VAT)				원
합 계				원

온라인 납부 : 우리은행 2632-935-4318086 / 예금주 : (주)엑스코 (송금시 반드시 "회사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3대한민국IT융합엑스포」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이면수록)을 수락하고, 계약금(참가비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서에 날인한 상기인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과되었음을 보장한다.

2013 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ITCE 2013 사무국 귀중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정의)

1. '전시자' 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
2. '주최자' 라 함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말한다.
3. '주관자' 라 함은 "(주)엑스코"를 말한다.
4. '전시회' 라 함은 "2013대한민국IT융합엑스포(ITCE 2013)"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참가비 (무스비용)의 50%(무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잔금(무스비용의 50%(무가세 포함)+부대시설신청비용)은 2013년 7월 12일까지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액을 반납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 배경)

1.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순에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경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차기간 이전에 할당된 부스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관리에 전념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 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변경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감하며, 무득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3. 6. 7일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 (무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 (무가세없음)으로 납부
- 2013. 6. 8일부터 2013. 7. 12일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 (무스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 (무가세없음)으로 납부
- 2013. 7. 13일부터 취소할 경우 : 참가비 (무스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 (무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반출 후 전시자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한다.

제9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장내의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등 발생하는 배정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보증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EXCO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생활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